

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

징 계 · 시 정 요 구

제 목 하수관로 설치사업 품질검사 및 대가지급 부적정

기 관 명 울산광역시 ○○군

징 계 대 상 자 울산광역시 ○○○○과 지방○○○ ○○○
(전 ○○군 ○○○○과)

징 계 의 종 류 경징계

훈 계 대 상 자 ① 울산광역시 ○○○○과 지방○○○○○ ○○○
(전 ○○군 ○○○○과)

② 울산광역시 ○○○○○본부 지방○○○○○ ○○○
(전 ○○군 ○○○○과)

내 용

지방○○○○○ ○○○는 2013. 7. 12.부터 2017. 1. 12.까지, 지방○○○○○
○ ○○○는 2017. 1. 13.부터 2018. 1. 11.까지, 지방○○○○○ ○○○은 2016. 7.
14.부터 2018. 1. 11.까지 각각 ○○군 ○○○○과에 근무하면서 “○○ ○○ ○○
일원 공공하수도 설치사업” 관련 업무 실무담당자 및 실무책임자였다.

「지방공무원법」 제48조의 규정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
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
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17조 및 제18조의 규
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·물품·용역, 그 밖에 재

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·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고,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.

○○군 ○○○○과는 2014. 5. 29. ○○○○○○(주)와 “○○ ○○ ○○일원 공공하수도 설치사업(하수관로 L=13.4km, 배수설비 328가구)”을 2,223백만원으로 계약체결 한 후, 2014. 6. 3. 착공하여 2017. 3. 20. 준공하였다.

또한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별도로 발주하지 않고, 2014. 6. 3. 지방○○○○ ○○○○를 “○○ ○○ ○○일원 공공하수도 설치사업”의 공사감독자로 임명하였고, 2017. 1. 13.자 인사이동에 따라 2017. 1. 16. 공사감독자를 지방○○○○○ ○○○○로 변경 임명하여 설치사업을 관리·감독하였다.

계약상대자 ○○○○○○(주)는 2017. 3. 20. 준공금액 3,041백만원의 준공계를 ○○군에 제출하였고, ○○군 ○○○○과는 2017. 3. 21. ○○○○과 지방○○○○ ○○○○을 준공검사자로 ○○○○과 지방○○○○ ○○○○을 입회자로 임명하여 ○○○○과에 통보하였다.

○○군 ○○○○과는 2017. 3. 21. ○○○○과로 지방○○○○ ○○○○을 준공검사자로 선임 통보하고, 2017. 3. 23. 준공검사를 실시하였다.

○○군 ○○○○과는 위 사업 감독부서로서 설계서에 압송관로에 대한 수압시험, 배수설비 오점검사(연막시험), 매설된 관로의 내부 확인을 위한 관로 CCTV 검사 등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관련 품질시험의 적정 이행 여부를 감독하여야 하고, 준공 검사 시 시험성과품 등을 확인한 후 준공하여야 한다.

그런데 공사감독자 지방○○○○○ ○○○와 지방○○○○○ ○○○는 계약상대자가 수압시험 및 배수설비 연막시험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 및 시정 조치 없이 사업을 추진하였고, 준공검사자 지방○○○○○ ○○○은 수압시험 및 배수설비 연막시험 비용이 준공내역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계약서 및 설계서에 따라 적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준공검사를 실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22백만원의 품질검사 대가를 과다하게 지급하였다.

또한 매설된 관로 내부 검사를 위한 관로 CCTV를 확인한 결과, 전체 CCTV조사대상 관로 7,396m 중 31%인 2,265m, 67개 구간의 CCTV 성과품이 동일한 영상으로 조작되어 준공성과품으로 제출되었다.

그런데 공사감독자는 매설된 관로의 적정 시공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, 성과품이 조작되어 제출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 및 시정 조치 없이 사업을 추진하였으며, 준공검사자는 설계서 및 계약서 등에 따라 계약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준공성과품 등의 검토를 소홀히 하여 계약상대자에게 6백만원(제경비 포함)의 품질검사 대가를 과다하게 지급하였다.

그 결과, ○○군 ○○○○과는 아래 [표1]과 같이 계약서 및 설계서대로 이행하지 않은 품질검사 대가 약 28백만원을 과다하게 지급하였다.

[표1] 수압 및 연막시험 등 미실시에 따른 부당 지급 금액

구분	수량	금액(원)	비고	
순공사비	수압시험	32 개소	6,442,400	
	연막시험	311 개소	10,570,268	배수설비 오접검사
	관로CCTV	2,265m	4,616,070	
	소계		21,628,738	
제경비		6,188,682	순공사비의 33.8%	
공사비 합계		27,817,420		

※ 울산광역시 ○○군 제출자료 재구성

정부합동감사 시 관로CCTV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, 아래 [표2]와 같이 6개 구간에서 침하로 인한 심한 퇴적물 및 물고임 현상이 발견되는 등 하수관로 설치사업 품질검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부적정하게 준공한 것을 확인하였다.

[표2] 감사 시 하수관로 부적정 시공 확인 현황

HH2-04~05 (13.5m지점 관로침하)	HH2-06~07 (14.5m지점 관로침하)	HH4-07~08 (8.0m지점 관로침하)
“삭제”	“삭제”	“삭제”
SH1-04~05 (34.0m지점 퇴적, 물고임)	SH1-05~06 (7.0, 23.5m지점 퇴적, 물고임)	SH1-06~07 (32.0m지점 퇴적, 물고임)
“삭제”	“삭제”	“삭제”

※ ○○군 제출자료 재구성

○○군 ○○○○과는 “○○ ○○ ○○일원 공공하수도 설치사업”에 대하여 설계서 및 계약서에 따라 계약 이행을 위한 관리·감독을 소홀하였고, 부적정한 준공 검사로 준공대가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등 관련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.

위와 같이 “○○ ○○ ○○○○ 공공하수도 설치사업” 품질검사 및 대가지급 부적정과 관련하여 지방○○○○○ ○○○와 지방○○○○○ ○○○는 공사 감독자로서 실무책임이, 지방○○○○○ ○○○은 준공검사자로서 담당책임이 있다.

따라서 지방○○○○ ○○○의 행위는 「지방공무원법」 제48조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제1항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.

조치할 사항 **울산광역시 ○○군수는**

[징계] 위 관련자 중 ○○○을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2조에 따라 징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.

[훈계] 위 관련자 중 ○○○, ○○○를 훈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.

[시정] ① 계약상대자에게 성과품 없이 부당하게 지급한 품질검사 대가 등 27,817천원을 회수 조치하여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반납하고,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

② 시공 상태가 확인되지 않고 준공된 하수관로에 대하여 시공 상태 확인을 위한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, 부실시공 및 계약내용의 이행 없이 그 대가를 청구·수령한 시공사에 대하여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고발 및 부실벌점 부과 등 적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.